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

558

2024. 10. 21.
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: 2024. 10. 10. / 남양주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4. 10. 10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10. 2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「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」 개정

나. 주요내용

- 가구당 직접지원사업비 한도 증액(500만원→1,000만원)
- 별지 서식 현행화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서용관)

- 본 안건은 「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」 개정(2023. 08. 29.) 사항을 반영하여 가구당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한도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,000만원으로 증액하고 별지 서식을 현행화한 사항임

- 기금의 총액 변동 없이 대상자별 직접지원사업비 최고배분액의 한도만 높이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

- 다만 “한강수계법”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현재 「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」에 따라 지원되고 있기에 현행 조례 제8조(사업비 지원)은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

4. 질의·답변요지 :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『수정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558-1
----------	-------

2024. 10. 21.

복지환경위원장

1. 수정이유

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현재 「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」에 따라 지원되고 있기에 현행 조례 제8조제2항은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제8조제2항을 삭제

남양주시조례 제 호

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.

